

6-4. 취약계층 의료복지 확대

주관부서	복지지원과	협조부서	-
------	-------	------	---

□ 목표 및 필요성

-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·간병 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
-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
-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

□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

(2022.8월기준/단위 : 명)

합 계	1종						2종	비고
	계	국민 기초	시 설 수급자	국 가 유공자	북한이탈민 주	기 타	국민 기초	
1,177	950	845	33	54	6	12	227	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2년 ~ 2026년
- 사업비 : 2,313백만원 (국 552, 도 134, 군 1,627)
- 사업내용
 - ①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 강화
 - 대상 : 만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 - 내용 : 신체수발 지원, 건강 및 가사 지원, 일상생활 지원 등
 - ②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
 - 대상 : 의료급여 수급자 1,177명
 - 내용

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의료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의료비 지원 : 진찰, 약제, 수술 등 의료비용 지원 ○요양비 지원 : 산소발생기, 당뇨 소모성 재료, 기침유발기 등 ○장애인 보조기기(휠체어, 보청기 등)·노인틀니·임플란트 지원
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수급자, 과다이용자, 중증질환자 등 선별하여 사례관리 추진 -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복지서비스 연계 ○의료급여 상한일수와 선택의료기관 설정하여 합리적 이용유도

□ 기대효과

- 저소득층 가사·간병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
-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

□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 재원	총계	기투자	투 자 계 획					2027 이후	
			소계	2022	2023	2024	2025		2026
계	2,313	-	2,313	444	453	463	472	481	-
국비	552	-	552	105	108	111	113	115	-
도비	134	-	134	26	26	27	27	28	-
군비	1,627	-	1,627	313	319	325	332	338	-
기 타	민자	-	-	-	-	-	-	-	-
	자담 등	-	-	-	-	-	-	-	-

□ 연도별 추진계획

연도	주요내용 및 확인지표	진도
202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을이장·홈페이지·SNS 등 홍보,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, 배포 • 의료급여 사업,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• 요양비, 장애인보조기기,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등 지원 • 의료기관 이용방법 안내, 개인 기초건강조사 및 상담 실시 	20%
202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료급여 사업,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• 가사·간병방문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추진 • 요양비, 장애인보조기기,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등 지속 지원 • 신규 및 다빈도외래 수급자 방문건강관리사업 분기별 연계 	40%
20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료급여 사업,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• 가사·간병방문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추진 • 요양비, 장애인보조기기,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등 지속 지원 • 신규 및 다빈도외래 수급자 방문건강관리사업 월별 연계 	60%
20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료급여 사업,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• 가사·간병사업 서비스 이용자 확대 추진 • 요양비, 장애인보조기기,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등 지속 지원 • 방문건강관리사업 월별 연계 및 반기별 간담회 실시 	80%
202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료급여 사업,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• 가사·간병사업 서비스 이용자 확대 추진 • 요양비, 장애인보조기기,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등 지원 • 방문건강관리사업 월별 연계 및 반기별 간담회 실시 	100%